

계절학기 운영규정

공포 제2025- 10호(개정 2026.1.6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 학칙에 의한 계절학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강대상) 수강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이수한 교과목 중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학업성적이 C+ 등급 이하인 자 (개정 2024. 12. 1.)
2. 정규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(개정 2024. 12. 1.)
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(개정 2024. 12. 1.)

제3조(교과목개설) ① 교과목 개설은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한다.

- ② 개설할 교과목은 해당 학과장이 개설 예정일 3주일 전까지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교과목당 수강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. (개정 2024. 12. 1.)
- ④ 제2조제3호에 의한 계절학기 개설의 경우는 수강신청자가 소속학과 교과과정표 이외의 타학과 교과과정표 상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이수한 학점은 학칙 제51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최저 필수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고, 일반선택으로 추가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한다.
- ⑤ 산업체별도학급의 재학생이 제2조제3호에 의하여 계절학기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과정의 산업체별도학급의 수업에 관한 제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.
- ⑥ 그 밖에 계절학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.

제4조(개설시기) 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.

제5조(수강신청) ① 계절학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서 양식에 기재 후 해당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 12. 1.)

- ②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제2조제1호의 경우 성적은 B+를 초과 할 수 없다. (개정 2024. 12. 1.)
- ③ 1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 강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실험·실습·실기는 1주 2시간씩 30시간 이상의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.
- ④ <삭제 2026.1.6.>

제6조(수강료)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규칙은 2024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.